

Issue & News

- I. EU 집행위,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Fit for 55' 정책패키지 발표
; 탄소중립(Net Zero) 시대로의 가속화 기대
- II.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ESG경영과 대응전략의 차별화
; 대기업은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중견기업은 자체 ESG 핵심역량 파악

EU 집행위,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감축을 위한 'Fit for 55' 정책패키지 발표

지난 2021.07.1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EU 역내 온실가스 순(Net)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Fit for 55'를 발표함. 'Fit for 55'는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기후, 에너지, 운송, 조세 등의 분야를 담은 포괄적 정책 패키지이며 'Fit for 55'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음.

표1. EU 'Fit for 55'패키지의 주요 전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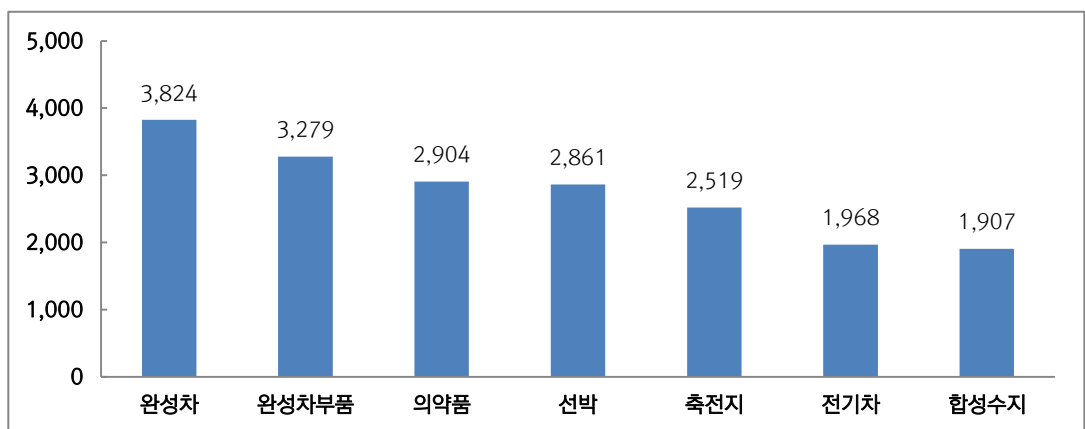
항목	주요내용
내연기관	-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 CO2 배출 감축 55% 달성 -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 대체연료 관련 별도 입법으로 회원국에 전기 및 수소연료충전소 설치 독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	- EU ETS 전체 배출권 상한 축소 - 해상운송의 기존 EU ETS 편입 - 항공운송 배출규제강화와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 별도 ETS 시스템 도입
사회적 기금조성	- 운송 및 건축섹터의 ETS 편입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사회기금 (Climate Social Fund) 설치 - ETS 수익의 25%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 구매 및 주택단열 등에 EU 예산을 지원할 예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 수입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에 대해 EU 역내 기업이 지불하는 탄소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 -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EU와 유사한 수준의 탄소가격 또는 규제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는 CBAM 적용을 면제할 예정 - 2023~25년 시범운영 후 2026년 본격 시행 및 단계적 적용을 확대할 방침 - 철강 등 일부 중공업섹터의 무료 배출권 할당도 단계적 축소 및 2035년 완전 폐지할 예정
회원국간 온실가스 감축분담	- 2030년 55% 온실가스 삭감 목표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의 육상운송, 건축, 농업, 공업 및 폐기물 등 non-ETS 섹터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11%p 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	- 현행 '신재생에너지지침(RED)' 규정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2% 목표를 40%로 상향조정 및 전체 건축물 에너지소비 49%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대 - 현재 20% 수준인 EU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10년간 40%로 두 배 가량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상 풍력발전의 중요성과 회원국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
건축물	- 건축물 소비 에너지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연간 1.1%씩 확대 - 각 회원국에 매년 3% 비율로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확대를 의무화하고,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의무를 공공주택으로 확대 - 리노베이션 확대전략(Renovation Wave Strategy) 개정을 통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관련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

에너지 세제	- 현재 용량별 부과되는 에너지 세제를 에너지 종류별 세제로 전환 - 최고 세율로 과세하고, 18년 경과한 최소에너지세의 상향조정 및 각종 세제 감면제도 폐지
해상 및 항공운송	- 항공운송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항공유에 대한 과세를 도입 - 2025년부터 소규모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공항에 청정항공유 급유를 의무화 - EU 역내 해상운송과 약 절반 가량의 국제해운을 ETS 제도에 편입 - 선박유에 대한 감세제도 폐지 및 지속가능한 선박유 확대 등을 계획
삼림 및 토지	- EU집행위는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규정(LULUCF)'을 개정하고 2026~2030년간 각 회원국의 연간 CO2 제거 의무를 부여 - 2030년까지 토지분야 기후중립목표를 설정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 - EU공동농업정책(CAP) 개정 및 농가의 탄소포집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
출처: 한국무역협회, 대신경제연구소	

이중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탄소조정세)의 단계적 시행계획이 중요 이슈로 판단됨.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하여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그 초과 분에 대해 해당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제도로, EU집행위는 202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6년 본격 도입할 계획임. 이에 따라 EU로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CBAM Certificate를 구매(CBAM 인증서, 배출량 1톤당 1장 필요)해야 하며, CBAM의 가격은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U ETS)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EU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 가격)과 연동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사실상의 관세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국내 해당 산업의 대EU 수출품목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WTO협정 위반 여부 등 시행까지 해소 해야 할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 CO2 배출 감축 55% 달성,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및 대체연료 관련 별도 입법으로 회원국에 전기 및 수소연료충전소 설치 독려 등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EU로의 완성차를 수출하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 기업 및 완성차 부품 업체에 향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내연기관 완성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사실상 2035년 내연기관 완성차의 판매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탄소배출 절감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그림1. 2020년 한국의 대EU 수출품목 순위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번 'Fit for 55'에서는 대체에너지에 관한 정책 또한 눈 여겨 볼만함.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을 목표함과 함께 대체연료 관련 별도 입법으로 회원국에 전기 및 수소연료충전소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건축물 소비 에너지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연간 1.1%씩 확대를 추진함. 또한 현행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회원국간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탄소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대체 에너지 활용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Fit for 55'의 정책들은 향후 수개월간 EU 내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CBAM의 WTO 위반 여지, 보복관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부 국가들과 'Fit for 55'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Fit for 55'에 대한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예상되기 때문에 탄소중립(Net Zero) 시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및 2차전지 등의 산업과 대체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되는 부분임.

(이중현 연구원 02-769-3768)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ESG경영과 대응전략의 차별화

최근 국내 상장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이슈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은 아직 불투명한 수준으로 알려짐. ESG경영은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금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은 이사회내 ESG위원회 설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등 기업의 홍보(PR) 측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중견기업은 홍보 보다는 해외 고객사와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밴드로서의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ESG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에게는 EU 무역장벽으로 이해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탄소국경세)가 일부 업종(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에 대해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당 연구소의 최근 발간보고서(‘10대 그룹, 이사회 내 위원회의 형식적 설치 및 제언’, 6/30)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106개社) 중 이사회내 ESG위원회를 보유한 기업은 50개社로 높은 비중(47.2%)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도 지난 2020년에 발간한 동 그룹 소속 상장기업이 21개사에서 최근 2021년 중에 보고서를 발간한 상장기업이 31개사로 증가하는 등 대규모 기업 중심으로 활발히 발간되고 있음. 이외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SIA, RMI/GBA, Drive Sustainability)에 가입하는 등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ESG경영에 대한 대규모 기업과 중견기업의 차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임. 우선 대기업은 우수한 자체 역량(인적, 재정) 이외에 글로벌 고객사 및 기관투자자의 ESG경영에 대한 요구(Engagement) 수준을 고려하면, 이사회 중심의 실질적인 ESG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임.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2019.06~2020.07)에서 투자기업의 ESG경영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즉, 투자기업의 ESG경영 중 <환경>영역에서 <기후공시 부족으로 관련 임원 의안 반대> 사례가 55건에 이르고 있음. 즉, BlackRock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적절한 ESG 정보공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관련 임원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임.

이에 반해, 중견기업은 국내 대기업의 1차 밴드로서, 대기업이 추진하는 ESG경영에 대한 방향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ESG경영에 발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요구받는 공급망 관리 관련해서, 대기업의 1차 밴드인 중견기업의 대응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임. 또한, 중견기업 입장에서 ESG경영이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견기업 스스로 ESG경영 관련 회사의 핵심역량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자체 분석이 필요함. 다만, 탈탄소와 관련된 중견기업의 ESG경영에 맞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금융 등 중견기업을 위한 필요한 정부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EU의 탄소국경세가 일부의 무역방벽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본 보고서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강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